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5. 13 선고 2021가단864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담당변호사 김경돈

피 고 1. 주식회사 B
2. C
변 론 종 결 2022. 4. 8.
판 결 선 고 2022. 5. 13.

주 문

- 가. 피고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8. 20.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주식회사 B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8. 25. 접수 제71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가. 피고 C와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7. 2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주식회사 B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7. 27. 접수 제871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3. 29.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 62,740,442원을 D 주식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가 배당받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26203호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여 2020. 10. 15. 위 법원으로부터 ‘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2,740,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이에 대해 소외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308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. 7. 22.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

나. 소외 회사는 2020. 7. 24. 피고 C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제1부동산’이라고 한다) 및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제2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 C에게 이 법원 2020. 7. 27. 접수 제87146호로 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, 채무자 소외 회사,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.

다. 소외 회사는 2021. 8. 20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 회사’라고 한다)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,000,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, 이 법원 2021. 8. 25. 접수 제719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.

라. 피고 회사는 2021. 11. 2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았고, 이 법원 2021. 11. 3. 접수 제92965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.

마. 한편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, 소외 회사의 대표자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F로 동일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한 62,740,442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

1) 관련법리

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,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).

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(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),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)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,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,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,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

한편,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,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위 각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원상회복

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, 이 사건 제1, 2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숙희

별지